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닭·오리·계란 이력제 알(Egg)고, 믿(Meat)고 드세요

축산물 유통경로 투명해져 소비자 안심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지난 1월 1일 시행됐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생산단계부터 소비자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제 발생시 방역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이력추적과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 가금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으로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 준수사항, 효과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쇠고기와 달리 농장별 이력관리가 기본

장승진 축평원장은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개체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제와는 달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농장별 이력관리를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기대효과에 대해 “닭, 오리, 계란의 생산과 유통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가금(닭, 오리) 및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서 위해 요소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차단을 통한 안전성 강화로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닭, 오리고기,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제품의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사육단계 준수사항…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작성

장 원장은 “농장식별번호는 닭, 오리 등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정착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이력관리 단계별 준수사항을 세부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육단계에서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팩스(044-410-7178),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가금의 사육현황(품종별 사육마릿수)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선(이력지원실, 1577-2633),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의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수출입신고에 있어서 닭·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닭, 오리, 씨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축이 아닌 닭·오리를 수출입하는 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란신고의 경우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부화기에 입란하는 씨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양도·양수·이동(부화장 이동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농장의 농장식별번호와 이동 수량(닭, 오리의 품종별 마릿수/씨알의 개수) 등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축·선별포장 단계…

농장·품종별로 이력번호 발급 신청

닭·오리 도축 및 계란 선별포장 단계에서 이력번호 발급 신청 및 부여 시 닭·오리 도축장 경영자는 닭·오리를 출하한 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한 후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 및 품종별로 이력번호를 발급 신청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가정용으로 유통하는 계란을 선별하고 포장하는 경우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 및 산란일자별로 이력번호를 발급 신청하는데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유기식품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으



장승진 축평원장(사진 왼쪽 가운데)이 닭·오리·계란 이력제와 관련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모습.

로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직접 판매를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1만수 이하 사육 농장이 포함된다.

포장처리·수집판매 단계···

포장처리·거래내역 신고

닭·오리고기를 포장 처리하는 전산신고 의무자(도축장 연결, 종업원 5인 이상)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 중 HACCP 인증업체 포함)는 이력관리시스템에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입·출고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그 외 사업장은 자체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된다.

닭·오리고기에서 여러 개(10개 이하)의 이력번호를 하나로 묶어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묶음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묶음번호 사용은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묶음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서 계란은 제외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은 묶음번호를 조회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한다.

이력번호 표시와 관련해 닭·오리고기 포장처리업자와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

매업자(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이력번호가 부여된 계란을 소분 또는 재포장 가능)는 각각 닭·오리고기의 원료육과 계란의 원료란에 부여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제공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거래명세서 발급 제공은 '축산물 이력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판매단계···최소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확인

축산물판매업자는 닭·오리고기, 가정용 계란을 판매할 때는 최소 포장에 이력번호가 표시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닭·오리고기, 계란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또는 스마트폰 앱(축산물이력제)을 통해 최소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입력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력(묶음)번호를 조회하면 출하 농장, 도축장(계란은 선별포장업체), 포장처리업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목표로 닭·오리 사육농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의 축산물이력제 민원

